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화학물질의 정의 규정 명확화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0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화학물질의 정의 규정 명확화	2

I. 제안경위

2025년 2월 4일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문구상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 또는 정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을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화학물질의 정의 규정 명확화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정의 중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에서 ‘화학적으로’가 수식하는 범위를 ‘변형’에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u>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u>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1. ----- ----- ----- ----- <u>변형</u> <u>(화학적 변형에 한함)</u> 시키거나----- -----.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조1)에서는 ‘화학물질’을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1) 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화학물질의 정의에서 ‘화학적으로’라는 부사구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이후의 추출 또는 정제에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 심의 요청이 있었음²⁾.

이에 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³⁾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의 수식범위를 ‘변형’에 한정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정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⁴⁾, 「화학물질관리법」⁵⁾에서 동일하게 규정하

2) □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배경(민원인 제기, '24.10.8)

- (질의요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정제한 것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제3조제1호의 “화학적으로”가 “변형”만 수식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 민원인은 “화학적으로”가 “추출·정제”까지 수식하므로, 물리적으로 추출·정제한 것은 제3조제1호에서 제외된다고 주장

3) □ 법령해석 결과(법제처 통보 : '25.1.15)

- (통보내용)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정제한 것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지 않음
 - (사유) 입법연혁* 등을 고려할 때, “화학적으로”는 “변형”만 수식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
 - * 종전의 정의규정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이었으나, 이후에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라는 용어가 추가됨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고 있으므로, 법률 간의 명확성과 체계간의 정합성을 위하여 이를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